

# 아일랜드 전력소매시장의 전면개방

아일랜드에서는 1999년에 전력규제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이 추진되어 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5년 2월 19일, 전력규칙을 확정하고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 아일랜드의 개요

아일랜드는 EU 가맹국의 하나이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약 71% 상승하는 등, 최근에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력 수요도 신장되고 있으며 CO<sub>2</sub>의 배출삭감과 설비투자 축진의 양립(兩立)이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과제로 되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927년에 전력공급공사(ESB)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ESB가 독점적으로 전력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ESB는 19개소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쪽 해안과 남쪽 해안에 건설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까지 400kV의 송전선으로 전력을 보내고 있다. 2004년 말까지의 소매전기사업자는 19개사, 총수용가 수는 약 180만에 이르고 있다.

## 자유화까지의 경위

1996년 말에 EU 전력자유화 방침이 확정된 후 다른 EU 가맹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도 단계적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전

력규제법」에서는 ESB의 주식회사화 및 조직재편,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등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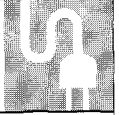
2002년 2월에는 전력의 연간사용량이 400만kWh를 초과하는 대수용가(약 32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소매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다. 그 후 2002년 2월과 2004년 2월에 단계적으로 자유화 대상을 넓혀 시장개방율은 약 56%로 상승하였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나 코제네레이션 발전에 의한 그린(Green)전력 공급에 관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촉진의 관점에서 2002년 2월에 전면자유화되었다.(표 참조)

## 주요한 공급사업자

ESB는 1999년에 국가 소유의 주식회사로 되었으며 여전히 이 나라의 주요한 공급사업자이다. ESB의 전기요금은 경쟁가격이 아니고 에너지규제위원회(CER)의 규제를 받고 있다. 2002년의 자유화시장에서의 ESB의 지분은 68%이었다.

ESB 이외의 전력공급사업자로서는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Viridian 그룹의 Energia사, 풍력발전을 주로 하는 Airtricity사, 그리고 코제네레이션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또 2004년에는 독일의 RWE사가 아일랜드 전력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력사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 나라의 가스사업자인 Bord Gais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VIPP의 경쟁입찰을 거쳐 전력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VIPP란, ESB의 발전설비 중의 일정용량의 이용권을 경매하는 것으로, 발전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라도 소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ESB 이외의 사업자가 전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CER가 발행하는 면허가 필요하다. 요금은 규제받지 않고 경쟁가격이 된다.

**자유화에 따른 전기요금의 동향**

연료가격의 상승, 시장의 자유화, 유럽 배출권 거래에의 참여에 의한 코스트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아일랜드의 전기 요금은 최근 상승경향에 있다. 2004년은 세계적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하여 영국 등의 전력사업자가 잇따라 소매요금의 가격을 인상했는데, 아일랜드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ESB는 2004년 10월, 연료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요금을 9% 인상하고 2005년 1월에는 연료 이외의 코스트(송전계통의 개보수, 발전소의 점검, CO<sub>2</sub> 배출관련 코스트,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계량기제도의 도입코스트, 공공서비스관련 코스트) 부담을 이유로 3.5% 인상하였다.

공공서비스란, 경쟁의 도입에 임해서 전력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공급보장과 환경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는 公益企業省의 지시에 의하여 국산자원의 피트(Peat)와 재생가능에너지 전원의 조달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공급사업자의 변경을**

2002년 시점에서 자유화대상 수용가의 약 1/3에 상당하는 약 400개소의 수용가가 ESB에서 다른 공급사업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그린전력 공급은 2000년부터 전면 자유화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약 1만 6,000개소의 수용가가 ESB에서 그린 전력 공급으로 변경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하다. 이 요인으로서 총설비용량 450만 kW(2003년), 총수용가 수 180만으로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신규참여자에 스케일 메리트(Merit of Scale)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금수준도 ESB와 다른 사업자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었어도 지금은 수용가의 대부분이 ESB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력자유화까지의 경위**

년	자유화까지의 경위	시장개방율
1997년	EU 전력자유화지령 확정	
1998년	동지력 발효	
1999년 7월	전력규제법 제정	
	전력규제위원회(CER)설립	
2000년 2월	연간소비량 400만kWh 이상의 수용가(약 32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부분 자유화 ※그린 전력의 전면 자유화	28%
2002년 8월	연간 소비량 100만kWh 이상의 수용가(대·중 규모의 기업 등 약 1,20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부분 자유화 가스 잠정 규제법 제정(가스시장의 자유화를 규정)	40%
2004년 2월	연간소비 10만 kWh 이상의 수용가 (산업·상업용의 수용가, 중소기업 등 약 12,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부분 자유화	56%
2005년 2월 19일	자유화 대상을 주택·가정 부문에도 확대하여 전면 자유화	100%
2007년 7월 1일	EU 가맹국 시장의 전면 자유화의 기한	

주 : 시장개방율은 판매전력량 기준.